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03 발의연월일: 2025. 4. 24.

발 의 자:이학영·박 정·김성환

김태선 • 이용우 • 김용만

전재수 · 김기표 · 백선희

이강일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우리나라는 이주 아동(18세 미만)의 권리를 규정한 「UN아동권리협약」을 1991년 비준함에 따라, 협약 이행 당사국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등 교육과 관련한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.

그동안 등록 외국인 자녀의 입학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,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에는 입학 등에 어려움이 있어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 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.

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 시행령에 미등록 이주아동의 입학 등을 위한 절차를 용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고등학교의 입학 등은 교육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,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학 습권의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교육에 취약한 문제가 있음.

이에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

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학습과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미등록 이주아동이 초·중·고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외국인 아동 또는 학생의 범위에 미등록 이주아동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(안 제28조의2제1항제2호 후단 신설).
- 나.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학, 전학, 상급학교로의 진학 등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(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).
- 다. 다문화학생등이 다문화학생등이 아닌 학생과 학습과정, 복지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조치를 하도록 함(안 제28조의2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초・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2제1항제2호 중 "학생"을 "학생.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이 경우 외국인 아동 또는 학생의 범위에는 「출입국관리법」 제23 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 람으로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(이하 "미등록 이주아동"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학, 전학, 상급학교로의 진학 등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학생등이 다문화학생등이 아닌 학생과 학습과정(체험·참여 학습을 포함한다), 복지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했 개 정 아 제28조의2(다문화학생등에 대한 제28조의2(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 교육 지원) ① -----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(이하 "다 문화학생등"이라 한다)의 동등 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.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 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 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 동 또는 학생 <후단 신설> ----학생. 이 경우 외국 인 아동 또는 학생의 범위에 는 <u>「출입국관리법」 제23조</u> 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 인 사람으로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(이하 "미등록 이주아동"이라 한다) 을 포함한다. <신 설>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

<신 설>

② ~ ⑤ (생 략)

등록 이주아동이 국민과 같은
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
을 받을 수 있도록 입학, 전학,
상급학교로의 진학 등에 있어
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
문화학생등이 다문화학생등이
아닌 학생과 학습과정(체험・
참여 학습을 포함한다), 복지서
비스 이용 등에 있어 동등한
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
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
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④ ~⑦ (현행 제2항부터 제5
항까지와 같음)